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1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박지원 · 이개호 · 소병훈

김 윤 · 전은수 · 권향엽

박해철 · 장종태 · 박균택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에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u>이바지하고,</u> <u>「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 ----.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u>할 수 있다.</u>	----- <u>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